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의안 번호	6435
----------	------

제출연월일 : 2024. 12. .
제 출 자 : 대통령

주 문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마용주)의 임명에 동의한다.

제안이유

대법관(1인)의 임기가 만료(2024. 12. 27.)됨에 따라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임.

임명동의대상자

- 성 명 : 마 용 주(馬 鏞 周)
- 생년월일 : 1969년 7월 1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xxx, x동 xxxxx호 (서초동, xxxxx)

※ 불 입

-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부.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
-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1부.
-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1부.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부.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 임명동의 요청대상자

성명 : 마 용 주 (馬 鏞 周)

생년월일 : 1969. 7. 1.

2. 임명동의 요청사유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탁월한 판단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임.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재판진행과 엄정하고 명쾌한 법리 적용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내려 소송관계인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왔음. 특히 분쟁의 중심에 선 당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사건의 실체에 관한 핵심적 쟁점 위주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담은 판결문을 작성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25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직접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생산 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자동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현대자동차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현대자동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으로 폭넓게 인정하여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제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였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해 운영하는 대기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한 연구원을 성균관대학교가 해고한 사건에서 해당 인터뷰는 대학과 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의 민주적 운영 필요성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해당 기사에 표현된 비판적인 내용들이 대학 내 연구원 등이 언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학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사교육업체의 직원들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을 통해 개정안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근로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입대 이틀 만에 사망한 사병이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50년 만에 밝혀지자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군훈련소 입소자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순직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다음 원심을 뒤집고 국가는 유족들에게 모두 1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과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책임 등을 폭넓게 인정하였음.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간 재직할 정도로 법리에 해박하고, 중요 상고사건의 조사 및 연구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여 대법원이 현실에 맞고 합리적인 법리를 정립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뿐만 아니라 법학 연구에도 매진하여 동료 및 선후배 법관은 물론 다른 법조 직역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는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는 등 법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섭렵한 법률가라는 평가를 받음.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출중한 사법행정능력도 겸비하였음. 특히 윤리감사관으로 재직 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하여 법관 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개선하였음.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뛰어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드높은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 훌륭한 인품과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통능력,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과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까지 겸비하고 있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으로의 임명동의를 요청합니다.

직업 · 학력 · 경력에 관한 사항

- 이 력 서

- 재직증명서

- 졸업증명서

- 합격증명서

- 경력증명서

이 력 서

성명 : 마 용 주 (馬 鏞 周)

생년월일 : 1969. 7. 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XXX, X동 XXXX호 (서초동, XXXXX)

직 업

2024. 12. ~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원)

학 력

1985. 3. ~ 1988. 2. 낙동고등학교 졸업

1988. 3. ~ 199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2001. 6. ~ 2002. 6.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LL.M)

경 력

1991. 10.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7. 2. ~ 1999. 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 3. ~ 2001. 2.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1. 2. ~ 2004. 2. 대전지방법원 판사
2001. 6. ~ 2002. 6.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조지타운대학)
2004. 2. ~ 2005. 2. 대전고등법원 판사
2005. 2. ~ 2008. 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5. 2. ~ 2005. 12.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겸임)
2006. 1. ~ 2006. 12.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실 판사(겸임)
2007. 1. ~ 2007. 2.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겸임)
2008. 2. ~ 2009.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 2. ~ 2010.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2010. 2. ~ 2012. 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2. 2. ~ 2014. 2.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 2. ~ 2014. 2.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겸임)
2014. 2. ~ 2016.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 2. ~ 2017. 2.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2016. 2. ~ 2017. 2.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겸임)
2017. 2. ~ 2019. 2.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9. 2. ~ 2021. 2.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21. 2. ~ 2024. 1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4. 12. ~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원)

병역

1994. 5. ~ 1997. 2. 육군 대위(만기)

상훈

○ 해당사항 없음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병적증명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 공직후보자 재산공개확인서
-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관보)
-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세(체납)증명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조회서

재산관련 부속서류